

##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1264
----------	------

제출년월일 : 2008년 9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안이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2004. 12. 31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안 제5조)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안 제6조 내지 제7조)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 및 예외(안 제8조 내지 제9조)
- 친환경구매촉진을 위한 교육(안 제10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관계법령 : 붙임

-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4. 관련조례(충청북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 1부  
5. 관련조례(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1부

##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제천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천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친환경 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2. 시 의회사무국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4.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①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①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 12. 29 제7996호(국가공무원법)]

1. 3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2.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장
4.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계부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시행일 2006. 7.1] }
5. 1인의 환경부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시행일 2006. 7.1] }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친환경상품진흥원) ①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9.27>

1.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2. 친환경상품 내상품목 및 판단기준의 개발
  3. 상품의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업무
  4.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홍보
  5. 친환경상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정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친환경상품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 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도)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및 구(시·군)
2.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및 구청(시·군)의 소속행정기관

##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이 되고, 위원은 시(도)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식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출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시장(도지사)은 법 제3조제1항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도)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14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③시장(도지사)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이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제3항에 의거 구청장(시장·군수)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이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과 제3항에 의거 구청장(시장·군수)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①법 제6조에 의한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친환경상품의 구매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제11조의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자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자금 및 용자지원 확대)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용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 및 구(시·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도) 및 구(시·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산업계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등

제21조(기관 평가) ①시장(도지사)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은 구청장(시장·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가단체 관계자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도) 및 ○○구(시·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조례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안)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산하기관장(제4조 제2항의 기관)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위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도내기업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포함)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기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 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지방행정6급	생활환경팀장				
김효동	09/05 김동석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환경상품구매촉진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 제정 조례(안)
2. 공공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8 - 864호
3. 공고기간 : 2008. 8. 9 ~ 8. 28(20일간)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118명
  - 의견제시자 : 없음
  - 내부 검토
    - ▶ 유사 위원회가 중복되어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 제천시환경위원회」에서 대행으로 변경

- 붙임 : 1. 공고안 1부
2.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제4조 발췌 1부  
(충청북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 끝.

제천시 공고 제 2008 - 864호

제천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8

제 천 시 장

##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2. 개정이유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04. 12. 31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안 제9조)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 및 예외(안 제12조 내지 제13조)
- 친환경구매촉진을 위한 교육(안 제14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생활환경팀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E-mail(khd5963@okjc.net)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381, FAX 641 - 5409 담당자 : 김효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관련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3085호

2008년 5월 9일

###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친환경상품구매 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관련 조례】

1999년 6월 21일 조례 제388호  
개정 2008년 1월 4일 조례 제827호

###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 제18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정제천 21」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